

## 유럽 정체성의 규범적 기초: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김준석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전임강사

본 논문은 유럽정체성에 관한 최근의 다양한 논의들 중 특히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제안한 헌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개념을 체계적으로 조명한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 시민들, 즉 유럽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 중 헌정적 애국주의는 공통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중심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정체성과는 달리 인권,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제도를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의 배타적인 속성을 극복하려 한다.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에서 반성적, 비판적 능력의 향상으로 인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세계시민주의와 공동체주의 간 논쟁의 틀 속에서 헌정적 애국주의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세계시민주의의 불편부당성을 옹호하는 헌정적 애국주의가 특정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정체성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윤리학” 일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럽정체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개관한 후 헌정적 애국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현실적 가능성에 관한 하버마스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기초를 국제규범이론의 틀에서 살펴보는 가운데 특히 규범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세계시민주의적인 측면과 애국주의적인 측면의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다.

**주제어:** 유럽통합, 정체성, 헌정적 애국주의, 하버마스,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 본 연구는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착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I. 들어가며

약 10여 년 전 출간된 한 저서에서 앤드류 모라브치(Andrew Moravcsik, 1998: 5)은 유럽통합의 본질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전형적인 근대적 권력정치”로 정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통합의 진전과 함께 유럽연합은 국제기구 혹은 국가 간 지역 협의체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정체(政體)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통합의 어젠다 역시 회원국들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조율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유럽연합이 새롭게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어젠다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통합 유럽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유럽연합은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 시민들, 즉 유럽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안이 부결되고, 회원국 확대에 대한 기존 회원국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이른바 “정당성의 위기”는 정체성의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끄 들로르(Jacques Delors) 전 유럽집행위원장은 “공동시장과 사랑에 빠지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Laffan, 1996: 95에서 재인용). 최근 들어 유럽정체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e.g. 조홍식, 2005; Checkel and Katzenstein, 2009).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요하는 한 가지는 유럽정체성을 전적으로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 유럽 차원에서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은 정당성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체성을 통해 시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촉진하는 것은 유용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바람직한 통합의 목표이기도 하다. 각 회원국 시민들이 유럽 시민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유럽정체성을 촉진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결여(democratic defici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이 통합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연합의 “민주화”가 그 자체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목표인 것과 마찬가지로(김남국, 2004). 유럽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체성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정체성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체성의 규범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유럽정체성의 규범적인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작업에 도전한다. 본 연구는 유럽정체성의 현실과 전망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대신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정체성의 내용과 형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위르겐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개념에 주목한다. 독일의 저명한 정치, 사회철학자인 하버마스는 이 개념을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유럽정체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을 통해 배타적이고 공세적인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시도는 야심적이지만 그만큼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자신이 속한 민족공동체, 국가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합리적인 정체성으로서 헌정적 애국주의가 해결하기 매우 힘든 딜레마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헌정적 애국주의는 현실적으로 과연 실현가능한가? 둘째, 헌정적 애국주의는 어떤 근거에서 규범적으로 정당한가?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기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하버마스는 자신의 사회이론에 호소하여 나름대로의 답변을 시도한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하버마스는 그다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는 헌정적 애국주의 개념을 둘러싼 혼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헌정적 애국주의는 보편적인 불편부당성을 규범적인 이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헌정적 애국주의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충하는 태도를 동시에 포함하는 헌정적 애국주의는 이율배반적이다. 헌정적 애국주의가 불편부당성을 지향하는 한 특정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규범적 지위는 모호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역으로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태도로서 헌정적 애국주의가 지향하는 불편부당성의 이상은 매우 위태롭게 보인다. 헌정적 애국주의의 이와 같이 상호모순적인 두 측면을 화해시키거나 적어도 양립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딜레마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하버마스 자신의 논의를 넘어 국제규범이론의 틀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세계시민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스펙트럼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설명하는 규범이론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헌정적 애국주의를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위치시킴으로써 위의 딜레마에 대한 답변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유럽정체성의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윤리학” 일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된다. 다음 제2장에서는 유럽정체성에 관한 기존 논의를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헌정적 애국주의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를 살펴보는 데 주로 새로운 정체성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관한 하버마스의 주장에 주목한다. 제4장에서는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기초를 국제규범이론의 틀에서 살펴본다. 특히 규범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세계시민주의적인 측면과 애국주의적인 측면의 화해가 어떻게 가능한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한다.

## II. 유럽 정체성에 관한 기존 논의

최근 들어 유럽통합과정에서 유럽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은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구분해주는 일련의 특징들을 의미한다. 즉,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을 구분시켜주는 속성들을 의미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 혹은 공동체의 경우 정체성은 공통의 속성을 정의함으로써 다른 집단, 다른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구별 짓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이러한 구별짓기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정체성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사회적 맥락을 제공해주기 때문이고, 집단이나 공동체의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나 계획을 추진하고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서적인 유대관계의 기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통합의 범위가 더 이상 경제협력의 촉진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히 회원국의 주권유지에 핵심적이라 간주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온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권한확대는 다른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이른바 “정당성의 위기” 혹은 “정당성의 결핍”의 문제를 초래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회원국 개개 시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내고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그러한 제약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Føllesdal, 2006: 442).

유럽정체성은 바로 이와 같은 정당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점차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Eriksen and Fossum, 2004: 441-43). 제도나 공동체에 대한 일차적인 소속감, “우리라는 의식 혹은 느낌”이야말로 정당성의 요구를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선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유럽연합의 회원국 시민들은 상당한 정도로 유럽연합에 대한 소속감, 일체감을 피

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04년에 실시된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약 47%의 유럽인들이 스스로를 영국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임과 동시에 유럽인인 것으로 정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신의 국가에 대한 소속감만을 밝힌 유럽인의 비율은 41%에 그쳤다(European Commission, 2005: 94).<sup>1</sup>

경험적인 차원을 넘어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유럽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전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먼저 유럽 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또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으로 개념화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민족과 국가는 이전과 같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 유럽 차원의 새로운 초국가 정체성이 기존 정체성을 대체할 것인가? 많은 이들은 두 수준의 정체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럽정체성의 등장에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회의론자들은 유럽통합의 성격과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유럽연합이 기존의 민족정체성을 대체할 만한 초국가적 정체성의 주체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력을 위한 제도이고, 평균적인 유럽인들이 통합을 통해 주로 기대하는 것은 이동과 여행의 자유, 고용과 교육기회의 확대, 소비자 선택의 확대 등 극히 실용적인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제도에 대한 독자적인 충성심, 일체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1995: 157-58)가 지적했듯이 “소비패턴의 수렴이 반드시 정치적 정체성의 수렴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

1. 물론 이러한 결과는 보다 신중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일 유럽통합이 중단되는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9%에 그친 반면, 43%의 응답자는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또 매우 안심될 것이라고 답변한 이들의 비율도 13%에 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 86). 이와 함께 자신의 조국과 유럽에 대한 애착심을 묻는 질문에 전자에 대해서는 92%의 유럽인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반면, 후자에 대한 애착심을 밝힌 이들의 비율은 67%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 103).

둘째,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은 흔히 생각되는 것보다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기초 위에서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럽 정체성의 형성이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을 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모든 정체성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유럽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상상”되고,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최근의 연구동향에 비추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정체성에 관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유럽정체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은 만일 모든 정체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유럽인들의 정체성이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고정불변하리라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또 유럽연합 혹은 통합유럽에 대한 정체성이 수월하게 구성되리라고 믿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안소니 스미스(Anthony Smith, 1992; 1993)와 같은 이는 기존 유럽의 민족국가는 그가 “에스니(ethnie)”라고 부르는 근대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역사-문화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정체성의 기반이 전적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통의 역사-문화 공동체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유럽정체성이 현실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유럽정체성에는,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족정체성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결속력과 역사적인 깊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Smith, 1992: 62). 스미스식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민족정체성의 지속가능성에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 설령 정체성이 상상되고, 구성되었더라도 일단 제도와 관행 속에 구체화되면 일종의 관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의식과 의미의 차원으로 국한시켜 그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성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Cederman, 2001: 150-52, 157-63).

마지막으로, 유럽정체성의 등장에 회의적인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민족정체성을 초국가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존의 민족정체성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각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매개체인 동시에 사회적 결속력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1995: 164, 184) 등의 견해를 예로 들 수 있다.

유럽정체성을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두 번째 문제는 유럽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경우에도 이 정체성의 형태와 내용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유럽인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의 확장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정체성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형성된다고 알려져 왔다. 또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 1차 집단적인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서적 친밀감의 범위가 전 유럽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가? 이에 관해 상반된 견해들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유럽공통의 문화와 문명의 공약수에 기초하여 초국가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1996)은 이른바 “서구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유산으로 그리스-로마 문명의 유산, 기독교, 법치주의, 대의제도, 개인주의 등을 들고 있다. 유럽정체성은 아마도 이러한 유럽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원재료로 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Cederman, 2001: 149-50). 다른 한편으로 정서적 친밀감으로서의 유럽정체성을 지지하면서도 유럽 공통의 역사, 문화유산의 존재와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그 존재와 형태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는 대신 유럽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유럽인들과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 예를 들면, 유럽 통합을 상징하는 유럽연합기(旗)와 음악, 지도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든지(e.g. Shore, 2000: 40-65), “유럽문화도시(European Cities of Culture)”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유럽공통의 문화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든지(Sassatelli, 2002), 장 모네(Jean Monnet)나 로베르 슈망(Robert Schuman) 등 “건국의 아버지들”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럽정체성의 기반을 새롭게 다질 수 있다.

유럽정체성을 지지하지만 이 정체성이 민족정체성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우선 모든 정체성이 정서적 친밀감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 집단의 정체성은 타 집단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집단을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 하지만 이때의 “우리”가 반드시 1차 집단적인 정서에 의해서 결속될 필요는 없다. 그보다 훨씬 약화된 형태와 내용의 정체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체성이 유럽정체성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다 (Kantner, 2006). 실제로 몇몇 경험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오늘날 유럽인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은 공동의 역사, 문화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 충성심이라기보다는 연합의 제도와 법률 혹은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지지와 승인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yer and Palmowski, 2004; Bruter, 2003). 예를 들어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유럽사법재판소 등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제도들을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유럽연합 제도와 기구에 대한 지지율은 회원국 정부기관에 대한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Mayer and Palmowski, 2004: 585-89).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연합에 대한 정체성이 연합의 제도와 법의 효율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유럽연합의 제도와 법률이 회원국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데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이 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실용적 정체성(utilitarian identity)”으로 부를 수 있다 (Kritzinger, 2005: 51-55).

이와 같이 유용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친밀감으로서의 정체성에 비해 보다 반성적인, 보다 향상된 분별력을 갖춘 정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진전이 현대사회의 시민들로 하여금 정체성의 문제에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전반기에 민족주의의 발흥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를 경험한 유럽인들이 정체성이 자칫 맹목적인 열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유럽인들은 다른 집단, 다른 국가, 다른 지역과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대립과 갈등을 바탕으로 하는 폐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정체성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새롭게 등장하는 유럽정체성이 전통적인 민족정체성의 형태를 취하는 상황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은 전통적인 민족정체성을 전체 유럽 수준에서 재생산하는 것은 특히 규범적인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조지프 웨일러(Joseph Weiler, 1999: 341)는 유럽연합이 “유럽합중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과도한 국가주의(statism)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설립된 정체가 스스로 초국가(superstate)로의 변신을 꾀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정체성에 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정체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수월하게 하는데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민족정체성의 부정적인 측면들, 특히 국가공동체,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절대시하여 다른 국가,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노정했던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유럽정체성이 민족정체성의 확대된 형태로서 일종의 “초민족(super-nation)” 정체성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율배반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유럽정체성은 유럽에 고유한 문화와 가치들을 강조하는 대신 보다 합리적이고 보편화될 수 있는 원칙과 가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을 앞세우는 배타적인 정체성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유럽정체성을 둘러싼 유럽인들의 고민과 딜레마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기존의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이 유럽정체성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수준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새로운 유럽정체성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유럽정체성이 유럽의 역사와 유럽통합의 세계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순히 몇 퍼센트의 유럽인들이 스스로를 유럽인으로 간주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따지거나 정체성 증진을 위한 유럽연합

의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유럽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정체성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형태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까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정체성의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정치이론,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저명한 정치,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헌정적 애국주의(constitutional patriotism)”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개념을 통해 하버마스는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을 대체할 유럽정체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이 정체성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이론을 검토한다. 특히 이 이론이 앞서 제기한 유럽정체성에 관한 유럽인들의 고민과 딜레마에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규범정치이론의 관점에서 헌정적 애국주의 이론의 의의를 평가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다.

### III.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

우선 앞 장에서 제기한 유럽정체성의 두 가지 딜레마를 정리해보면, 유럽연합이 그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는 현 상황에서 유럽인들은, 첫째, 과연 유럽정체성이 기존 민족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둘째, 유럽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같이 문화와 역사를 매개로 하는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민족정체성과는 다른 내용과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첫 번째 딜레마와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민족정체성이 서구 근대 민족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 특히 민족정체성은 민주주의 제도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동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공동의 역사와 언어, 문

화 등을 매개로 결속된 운명공동체임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유용했기 때문이다(Habermas, 1998: 112-13).

문제는 20세기 후반 들어 민족정체성의 통합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Habermas, 2001: 80).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한 국가 내에서 인종적, 성적,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들이 독자적인 활동영역의 확보를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의 등장으로 민족의식을 매개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었다. 보다 중요하게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민족국가, 국민국가는 사회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행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Habermas, 2003: 89). 국가의 자율성 상실은 민족정체성을 매개로 결속된 시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의 참여를 통해 자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졌다. 이제 통제되지 않고 위임되지 않은 국외의 경제 권력이 시민들의 삶을 직접 제약하는 상황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하버마스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유럽통합이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주적인 정당성, 민주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전 세계적인 차원의 통합 움직임을 중단시키거나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수준에서 세계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들을 국제적인 차원의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 유럽 차원의 정치적 장(場)”의 창출을 통해 “세계경제를 재(再)규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Habermas 2001b: 12; Habermas 2001a: 100). 하버마스가 유럽통합을 시장통합으로 간주하는데 반대하고, 유럽연합의 “정치화”를 주장하면서 유럽헌법의 채택을 강력하게 지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Habermas, 2003: 95-96).

만일 이상과 같은 하버마스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민족정체성을 대신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 사이의 신뢰와 결속을 보장하고 정치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유럽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점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다. 적어도 다른 유럽국가의 시민들이 자

신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유럽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Habermas, 2001a: 99). 하버마스는 우리가 새로운 유럽정체성의 등장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애초에 민족정체성이 지방, 지역 정체성으로부터의 인위적인 “추상화” 과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사한 메커니즘이 국경선을 넘어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Habermas, 2001b: 16).

여기에서 앞서 지적한 유럽정체성의 두 번째 딜레마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이 새로운 정체성이 어떤 형태와 내용을 지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새로운 유럽정체성은 기존의 민족정체성과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운명공동체에 대한 정서적인, 하버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前정치적인”, 일체감 대신 공동의 제도와 이 제도가 구현하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와의 동일시를 통해 획득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럽정체성은 유럽 공통의 역사와 문화, 문명을 매개로 형성되는 정서적 일체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화될 수 있는 가치들과 이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특히 헌법에 대한 “합리적인 충성심”으로 간주되어야 한다(Müller, 2007: 47). 이러한 정체성 우리는 헌정적 애국주의로 부를 수 있다(Habermas, 1998a: 117-20).<sup>2</sup>

하버마스는 이 새로운 유럽정체성이 정체성의 대상을 공통의 문화나 역사, 언어 등으로부터 보편적인 정치제도와 가치 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난 세기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인한 “도덕적인 대혼란”을 경험한 유럽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규범적인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bermas, 2001b: 21; Markell, 2000: 39). 하버마스는 특히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의 유럽역사”를 복원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중세시대로부터의 유럽공동의 역사를 확인하

2. 하버마스가 헌정적 애국주의의 개념을 처음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이는 도프 스테른버르거(Dolf Sternberger)로 전후 독일의 헌법문제와 관련하여 “Verfassungspatriotismu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Müller, 2007: 21-22).

는데 있지 않고, 21세기 세계에서 유럽의 역할에 상응하는 새로운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Habermas, 1996: 507).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주장은 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선 하버마스의 헌정적 애국주의가 충분히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헌정적 애국주의는 다른 모든 애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충성심, 헌신 등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모든 종류의 충성심이나 헌신 등의 태도는 어느 정도의 편파성과 배타성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따라서 헌정적 애국주의 역시 이러한 편파성, 배타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체성의 대상이 아무리 보편적인 제도와 원칙에 국한되더라도 모든 고정된 대상에 대한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경향을 지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헌정적 애국주의는 모든 종류의 정체성, 모든 종류의 일체감에 저항하는 전략과 실천으로 개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개진되었다(Markell, 2000: 54-58).

하지만 편파성과 배타성을 이유로 헌정적 애국주의에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견해는 비교적 소수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대다수 비판자들은 헌정적 애국주의가 지나치게 보편적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비판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일체감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가능한지의 여부와,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정체성이 정치적,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다. 첫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비판자들은 합리적인 정체성이 가능하다는 헌정적 애국주의 이론이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전제 위에서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이것은 이 이론이 기본적으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형태의 정체성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 정체성이란 결국 “나의 것”, “우리 것”에 대한 합리화되기 어려운 “열정”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과 관련하여 20세기 전반기에 주로 활동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쥘리앙 방다(Julien Benda)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종류의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성의 열정(passion of reason)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성의 열정 역시 열정이며, 더군다나 이성 그 자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Müller, 2007: 145에서 재인용).

두 번째 의문과 관련하여 비판자들은 시민들 사이의 결속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헌정적 애국주의보다는 훨씬 유기적이고 “두터운(thick)”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이들은 특히 제도와 원칙에 대한 정체성만으로는 전 유럽차원에서 민주적인 정치제도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시민들 사이의 책임과 의무의 상호관계를 지탱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각종 제도들이 유럽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럽시민들로 하여금 이 제도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것”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체성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 유럽 차원에서 민주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제도와 규칙에 대한 냉소주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부담을 지려하지 않는 태도, 일반대중들로부터 유리되어 군림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 등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Laborde, 2002: 601). 헌정적 애국주의자들은 정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보편적인 제도와 원칙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정체성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러한 제도와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적으로 결속된 시민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초국가기구가 존재해야 한다(Canovan, 2000: 423). 헌정적 애국주의의 지지자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옹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정적 애국주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먼저 헌정적 애국주의가 언제나 추상적인, “차가운” 정체성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얀-베르너 뮐러(Jan-Werner Müller, 2007: 62-63) 등에 의하면 헌정적 애국주의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심, 의분(義憤, righteous indignation), 활달함, 노여움, 죄의식”과 같은 일련의 감정들을 표출하며 또 이러한 감정들에 의거해서 행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0년 발생한 이른바 “하이더 사건(Haider Affair)”은 보편적인 원칙의 침해가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인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Müller, 2007: 113-14).

다음으로 우리는 하버마스가 오랜 기간 개진해온 사회이론의 틀 내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추상성과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견해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버마스는 오늘날의 유럽사회를 비롯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가 인간 삶의 배경조건, 전제조건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과 숙고가 이루어지는데 있음을 지적한다. 이렇게 체계화된 반성과 숙고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정체성의 틀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행동하고자 노력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 내에서 시민들은 그가 “탈(脫)인습적 정체성(post-conventional identity)”이라 부르는 종류의 정체성을 보유한다. 과거의 인습적 정체성이 문화와 전통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절대적인 동일시에 기초했다면 이 탈인습적 정체성을 보유한 이들은 정체성의 대상을 보다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탈인습적 정체성을 우리는 “반성적인(reflexive)” 정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Cronin, 2003: 7에서 재인용). 오늘날 유럽에서 정체성이 이와 같이 반성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변화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짐에 따라 “안정적인 삶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전통과 관습의 확실성에 기대지 않고 삶을 영위하는 “탈중심화된” 인간 형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데 기인한다(Habermas, 1998b: 223; Markell, 2000: 43). 헌정적 애국주의는 탈인습적 정체성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버마스의 견해를 유럽인들이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일체의 정서적인 친밀감과 일체감을 포기했다거나 혹은 그래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버마스는 다만 그러한 친밀감을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는 것이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Cronin, 2003: 9). 혹은 오늘날의 유럽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성적으로 숙고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러한 성숙함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적 정체성까지도 점차 반성적인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탈주술화된” 현대사회에서



그 누구도 종교적 진리에 관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믿음을 다른 종교적, 세속적인 이념들과의 관계에서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려 시도하기 때문이다(Habermas, 2006: 14). 헌정적 애국주의는 바로 이와 같이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기존의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인 제도와 원칙에 대한 헌신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기본 속성에 관한 이상과 같은 하버마스의 분석에 모든 이들이 기꺼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많은 이들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에 대한 하버마스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적이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과 행동방식에 대해 반성적이고 “탈중심화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식이 아니라 “불완전성”의 증거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가능성과 별개로 우리는 헌정적 애국주의가 규범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정적 애국주의는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정체성이다. 이는 헌정적 애국주의가 지난 세기 유럽이 겪었던 파괴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을 극복할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범적 정체성으로서 헌정적 애국주의가 여전히 일정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유럽에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넘어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헌정적 애국주의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형태의 정체성인가? 어떤 근거에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와 원칙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렇지 않은 정체성에 비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가? 공통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에 기초한 보다 전통적인 정체성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적합성의 측면에서 거부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규범적인 동기에서 보편적, 합리적인 정체성으로서의 헌정적 애국주의를 지지하는가? 혹은 정서적 친밀감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지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헌정적 애국주의가 전제하는 규범적인 세계

관 혹은 “배경이론(background theory)”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Müller, 2008: 544-45). 즉, 헌정적 애국주의 개념에 전제된 규범적인 이상(理想)의 논리적인 설득력을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제4장에서는 오늘날 국제규범이론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간 논쟁의 맥락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적실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특히, 한편으로는 보편성, 보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일체감을 강조하는 헌정적 애국주의의 독특한 논리구조가 규범이론적으로 쉽게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를 제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이 단순히 하버마스의 주장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있지 않다. 헌정적 애국주의를 포괄적인 규범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개념이 제기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단초로 삼아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기초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촉진하는데 있다. 궁극적으로 유럽통합 전반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 IV.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유럽정체성

##### 1. 세계시민주의,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세계관 혹은 규범적 배경이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먼저 세계시민주의로 알려진 규범적인 입장이 헌정적 애국주의 배경이론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주의는 다음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들 각자는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 관계없이 인류 전체에 대해 일정한 도덕적인 의무를 진다. 즉 우리가 다른 인간에 대해 가지는 도덕적 의무의 범위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공동체, 특정 정체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시민주의자들

이 모든 인간은 국적,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평등한 존재이며,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믿기 때문이다(Pogge, 1992: 48-49). 따라서 세계시민주의자에게 “나의 집단”, “나의 나라”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족과 동포에게 특별한 관심과 혜택을 제공하거나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세계시민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배경 이론을 이루는가? 앞서 지적했듯이 헌정적 애국주의의 핵심은 자유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와 원칙을 어떤 국가 혹은 정체에 대한 소속감의 원천이자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데 있다. 헌정적 애국주의자는 따라서 공통의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원초적인 정서적 일체감 혹은 자신이 속한 정체가 단순히 “나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정체성을 규범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편적, 합리적 가치에 근거한 헌정적 애국주의가 도덕적으로 정당한데 반해 그렇지 않은 정체성이 규범적으로 부적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헌정적 애국주의가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헌정적 애국주의는 나/우리와 다른 국가, 다른 정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구분이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이에 반해 공통의 역사와 문화, 언어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체성은 헌정적 애국주의에 비해 덜 개방적이고 보다 배타적이다. 이러한 배타적인 정체성은 타 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상당부분 용인한다.

결국, 규범적인 차원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핵심은 다른 국가, 다른 정체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세계시민주의적인 불편부당성을 요구한다는 데 있다. 다른 문화공동체, 다른 역사공동체에 속한다는 사실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대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정적 애국주의자들에게 이러한 불편부당성이야말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범적인 차원에서 보다 전통적인 정체성으로부터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즉 헌정적 애국주의가 도덕적인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동등한 관심과 배려를

규범적인 이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주의가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배경이론에서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물론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이 오직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정적 애국주의가 한편으로는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즉, 헌정적 애국주의가 한편으로는 전체 인류에 대한 불편부당성을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인류보다 낮은 단계의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애착과 헌신의 태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 애국주의적인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애국주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애착, 조국과의 동일시, 조국의 번영과 그 구성원, 즉 동포들의 번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의미한다(Primoratz, 2009). 따라서 얼핏 보기에 애국주의로서의 헌정적 애국주의는 세계시민주의로서의 헌정적 애국주의와는 사뭇 다르게 보인다. 애국주의는 자신이 속한 국가와 정체에 대한 충성의 태도, 동족, 동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의미하고, 그러한 관심의 논리적 귀결로서 다른 국가, 다른 정체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애국주의로서의 헌정적 애국주의는 규범적으로 정당하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조국과 동포에 대한 애착과 헌신으로서의 애국주의는 도덕적인가? 규범이론에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하면 그렇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 세계시민주의자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한다. 공동체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삶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의해서 “구성되며”, 특히 인간의 가치와 그가 삶에 부여하는 의미는 필연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Morrice, 2000: 235; Brown, 1992: 55). 이러한 정의는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사실의 기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이 공동체 내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일반화일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명제이기도 하다(Morrice, 2000: 240).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은 인간은 오직 공동체 내에서만 가장 인

간다운,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만일 공동체와의 끈이 떨어진다면 인간은 도덕과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판단기준과 실행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혹은 공동체의 관점을 포기하고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지, 어떤 삶이 진정으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삶인지 알 수 없고, 또 실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 바를 적절하게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인간은 오직 특정 공동체 내에서만,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다른 인간들과 맺는 관계들을 준거틀로 해서만,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MacIntyre, 1995: 217).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세계시민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불편부당성의 보편적인 이상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면 이 “급진적인 선택자(radical chooser)”로서의 인간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뿌리를 상실한” 인간일 뿐이며, 따라서 규범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Miller, 1995: 44).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만 도덕적일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은 “도덕적인 삶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MacIntyre, 1995: 218). 내가 나의 공동체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의 도덕성의 원천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동체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애국주의가 규범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다. 우리의 도덕적 삶 자체가 애국주의의 실현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즉 애국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현정적 애국주의의 애국주의적 측면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는가? 현정적 애국주의자들은 그러한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다. 물론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은 도덕적 삶에 관한 우리의 직관에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큰 호소력을 지닌다. 하지만 세계시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 그것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세계시민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의 도덕성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도덕성의 범위가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될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이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자들의 그러한 견해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한다. 불편부당한 관점을 지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초인적인 노력과 비범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Lu, 2000: 256).

둘째, 세계시민주의자들이 보기에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도덕적 삶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다른 공동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절대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변형을 위해 다른 공동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거나 그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정책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위협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합리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집단주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려한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의 주장 내에서 그러한 집단이기주의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제에 그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덕성의 실현이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하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국익을 위해 다른 국가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신의 조국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MacIntyre, 1995: 22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애국주의적 측면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헌정적 애국주의는 특정 국가나 정체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다른 국가와 정체의 구성원들에 대해 불편부당한 태도를 견지하려는 정체성으로 정의될 수 있고, 공동체주의의 시각에서 이해된 애국주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렇다면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불편부당성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먼저 일부 온건한 성향의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완고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원칙론적인 결론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Nathanson, 1989). 특히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의 기본전제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엘 타미르(Yael Tamir, 1993: 32-33)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적 삶이 공동체를 통해 구성되기는 하지만 규범과 도덕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도덕성이 공동체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 제3자의 관점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타미르는 인간의 삶은 “맥락적”이지만 그러한 특징이 인간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제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숙명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오늘날의 세계에서 민족공동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치단위체이다. 이는 모든 인간은 민족의식 혹은 민족정체성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심리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고, 또 개개 인간은 특정한 민족 집단에 소속되는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의미 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Miller, 1995: 138; Tamir, 1993: 5). 하지만 또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 인간의 객관화하는 능력 덕분에 민족정체성에 내재된 배타성과 차별성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인간은 공동체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고, 정체성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되는 것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정적 애국주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이러한 시도는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될 것인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완고한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정적 애국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정체성의 중심성을 옹호하면서 내세우는 근거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들에게 민족공동체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오직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만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규범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삶의 의미가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공동체주의적인 신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현정적 애국주의의 시각에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정적 애국주의는 세계시민주의의 시각에서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의무를 정의하려는 시도이며, 세계시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삶의 보편적인 판단기준을 찾아내는데 있다. 현정적 애국주의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정체에 대한 헌신이 보편적인 불편부당성의 관점에서 인정되고 용인되어야 한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접근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에서 출발하여 세계시민주의적인 관점을 제한적으로 포용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반해 현정적 애국주의는 세계시민주의에서 출발하여 특정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포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정적 애국주의자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자와 규범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자신의 국가나 정체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세계시민주의의 시각에서 인정될 수 있는 현정적 애국주의자의 애국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불편부당성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여기서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현정적 애국주의의 문제에서 잠시 관심을 돌려 “국제분배정의(international distributive justice)”의 문제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 2. 국제분배정의의 사례

오늘날 국제적 차원의 분배정의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 중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 정부와 시민들이 기아와, 질병, 극심한 빈곤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개발국 시민들을 지원하고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 그러한 의무의 도덕적으로 타당한 범위는 어디까지인



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선진국의 부유한 시민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 대해 불편부당한 원조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국적이나 인종, 민족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원조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일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절대적인 빈곤수준에서는 저개발국 빈민들 보다는 훨씬 나은 처지에 있는 자국 시민들, 동포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국 시민들이 도움을 받은 결과 의식주 문제를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 이상의 원조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한 ‘잉여’ 원조는 훨씬 더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개발국 국민들을 돕는데 훨씬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개발국 빈민들의 매우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원조를 자국민의 그다지 긴급하지 않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러한 주장은 세계시민주의의 대의를 수궁하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다. 하지만 이는 또한 원칙론적인 주장이며, 실제로 이러한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정부나 개인을 쉽게 상상하기란 어렵다. 또 상당수 세계시민주의자들이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식의 주장에 불편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에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한편으로 우리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는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책임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심한 거부감을 갖는다(Scheffler, 2001: 65). 이들은 또한 모든 인간은 그들 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국의 시민들, 민족공동체의 동포들을 도와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고 믿는다(Scheffler, 1997: 201). 다시 말해서 상당수의 세계시민주의자들은 국제분배정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세계시민주의적인 평등주의”를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국 시민들과 동포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와 같이 상반된 요구에 세계시민주의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먼저 토마스 포제(Thomas Pogge, 1992)를 비롯한 완고한 세계시민주의자들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진다는 견해 자체가 세계시민주의의 시각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포제에 의하면 현실과 세계시민주의의 괴리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이상에 맞추어 바꾸는 것이지 그 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기존 국제관계의 제도적 틀이 전 인류의 자유와 복지증진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틀의 변경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보다 온건하고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두 요구를 통합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특히 세계시민주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국 시민들과 동포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지원을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가지 흥미로운 포용의 공식이 제시되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대응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로버트 구딘(Robert Goodin, 1988: 678-86)과 같은 이는 기존 국가와 민족집단, 지역 공동체 등을 인류 전체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도구(administrative device)”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 경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지는 특별한 책임은 인류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의무와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할당된 의무와 책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다른 국가,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려움보다 이웃과 동포의 어려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노동 분업체계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딘의 주장은 위에서 제기한 통합과 매개의 문제에 대한 매우 ‘영리한’ 답변이다. 우리가 자국의 시민들과 동포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고 특별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시민주의 이상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딘의 주장은 매우 결론론적인 답변이기도 하다(Tan, 2004: 167-69). 그의 주장은 국가나 민족공동체의 존재이유가 국제분배정의의 위한 기능적 필요성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그다지 설득적이지 못하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은 구덩식의 결과론적인 설명 대신 국가의 특수한 성격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국가와 그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존재인가?

먼저 국가는 집단적인 협력체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안전보장, 재산권을 비롯한 각종 권리의 보존 등과 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를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결성된 상호부조모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가 그러한 공공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이들은 국가의 존재로부터 기여한 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얻는 반면, 다른 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만을 얻는다. 이는 공정성의 원칙 혹은, 안드레아 산지오반니(Andrea Sangiovanni, 2007)의 표현을 빌리면, “상호성(reciprocity)”의 원칙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든 이들은 자신이 국가의 역할수행에 기여한 만큼의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국가의 존재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이 정당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진다. 예를 들면, 한 국가 내에서 부유한 시민이 자신의 성취가 오직 일정한 제도적 틀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러한 틀이 적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원조를 자신의 도덕적 의무로 수용해야 한다(Sangiovanni, 2007: 25-26).

국가가 특별한 존재인 또 하나의 이유는 국가가 다른 공동체들과는 달리 그 구성원들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마이클 블레이크(Michael Blake, 2001)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무리 민주적인 국가일지라도 강제적인 권력행사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가가

오직 시민들의 동의에만 근거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블레이크는 국가가 강제적인 권력을 행사해야만 하는 이유를 국가의 정책과 법률, 제도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찾는다. 일부 시민들의 경우 다른 시민들에 비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거나 혹은 국가에 의해 과도한 부담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동기를 상실하는데, 이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하다.

블레이크는 강제적인 권력행사의 결과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얻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는 시민들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한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세운 목표에 맞추어 혹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위해 나갈 권리를 지니는데 국가의 강제적인 권력행사로 인해 이들 시민들의 권리가 크게 제약된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침해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정치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자기존중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Miller, 1998: 212-16). 따라서 상호성의 훼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과 같이 국가권력의 강제적인 행사로 초래되는 시민들의 자율성의 상실, 상호신뢰 관계의 훼손은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구성원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블레이크나 산지오반니 등의 이상과 같은 설명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국가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자국민과 동포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가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Blake 2001: 264). 즉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불편부당성의 도덕적 의무와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호성과 자율성, 상호존중과 신뢰 등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가치에 속한다. 만약 동료시민들이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가치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같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일조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들을 특별하게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경우 동료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연대의식은 세계시민주의의 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 즉 불편부당성을 행위의 준거틀로 삼는 이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책임을 져야 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3.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로서의 헌정적 애국주의

국제분배정의의 문제에서 세계시민주의적인 관점과 양립가능한 방식으로 자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하려는 이상과 같은 시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아직 힘들다.<sup>3</sup>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도는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주의의 신념을 가진 헌정적 애국주의자가 어떤 규범적 근거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의 질문에 우리는 블레이크나 산지오반니 등의 주장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헌정적 애국주의자는 세계시민주의의 불편부당성을 지향하지만 그는 또한 다수의 주권국가들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특정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다. 시민으로서 헌정적 애국주의자는 국가의 역할수행과정에서 동료시민들이 보편적인 권리의 침해를 겪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는 곧 헌정적 애국주의자에게 자신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보편타당한 가치가 실현되는데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정적 애국주의자의 의무는 그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신념과 온전하게 양립가능하다.

종합하면, 헌정적 애국주의자의 애국주의는 자신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권리와 가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헌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

---

3. 이러한 시도에 대한 보다 엄격하게 세계시민주의적인 시각에서의 비판을 위해서는 Caney(2008) 참조.

한편으로는 세계시민주의적인 불편부당성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헌정적 애국주의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규범적으로 정당하다.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헌정적 애국주의자의 애국주의는 그가 자신의 조국이 보편타당한 기준에 비추어 정의롭기를 원하는 한에서, 또 그렇게 정의로운 국가의 실현에 자신 역시 일정하게 기여할 책임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한에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는 자신의 국가가 옳건 그르건 간에 이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러한 무조건적인 애국주의야말로 헌정적 애국주의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헌정적 애국주의는 충성과 헌신의 대상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견지하는 가운데 충성과 헌신의 이유와 근거를 보편타당한 원칙의 실현에서 구하는 ‘합리적인’ 정체성 혹은 ‘조건부’ 정체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부딪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유럽연합과 같이 주권국가가 아닌 초국가기구에도 동료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의 논리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계시민주의자는 자신의 조국과 그 구성원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특별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집단적인 협력체로서의 또는 강제적인 권력행사의 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그 형태와 역할에서 일반적인 주권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Nagel, 2005: 143-44). 과연 유럽연합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유럽시민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유럽연합은 그 역할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유럽시민들의 삶은 전체 연합차원의 정책결정과 법집행에 의해 점점 더 큰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유럽연합은 유로화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통화동맹 가입국들이 재정적자 폭을 일정한도 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특정회원국과 그 회원국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희생과 행동의 제약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의 역할수행 결과 앞서 살펴본 주권국가의 맥락에서와 유사하게 상호성, 자율성의 측면에서 일부 유럽시민

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유럽시민들이 상호간에 특별한 대우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중요한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유럽정체성으로서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유럽의 헌정적 애국주의자가 유럽연합과 유럽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그가 유럽연합의 정책수행과 법집행 과정에서 동료시민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그러한 권리침해에 관심을 보이고 일정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즉 유럽연합에 대한 헌정적 애국주의는 그것이 유럽시민들의 보편타당한 권리와 가치가 실현되는데 대한 관심과 헌신이고, 유럽연합이 보다 정의로운 초국가연합체가 되는데 대한 관심과 헌신인 한에서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유럽정체성을 유럽에 공통적인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헌정적 애국주의자들의 비판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설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거니와, 헌정적 애국주의는 기존 정체성에 대한 규범적인 대안이다.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합리적이고 반성적으로 구성되기를 주장하는 헌정적 애국주의의 의의는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차원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정당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비현실성을 이유로 헌정적 애국주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 개념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다만 문제는 헌정적 애국주의가 불편부당성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특정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태도 역시 옹호한다는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를 동시에 옹호하는 헌정적 애국주의는 규범적으로 정당한가? 즉, 양자 모두를 지향하는 헌정적 애국주의자는 자기 신념의 도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헌정적 애국주의는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이상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분명히 이러한 질문에 합리적인 이유에서 “그렇다”고 대답할 근거가 있다.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배경이론을 조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다소 장황하고 번잡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유럽정체성의 새로운 대안으로 헌정적 애국주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의 현실적, 규범적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헌정적 애국주의의 규범적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시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불평부당성의 이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특정한 공동체나 정체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헌정적 애국주의의 설득력 역시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헌정적 애국주의의 비현실성을 강조하면서 이 개념에 대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정체성이란 결국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구분을 통한 나의 확인, 우리의 확인에 다름 아니고, 따라서 보편적인 원칙과 제도를 정체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헌정적 애국주의자의 주장은 정체성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위르겐 하버마스 자신이 헌정적 애국주의에 대한 견해에서 약간의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판론과 회의론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는 지난 2003년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와 공동으로 유럽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래 미국과 대조되는 유럽 고유의 가치에 기초한 유럽정체성의 등장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즉 전통적인 유럽정체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하버마스가 유럽정체성의 문제를 더 이상 헌정적 애국주의의 시각에서 이해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Lacroix, 2009).<sup>4</sup>

4. 다른 한편으로, 하버마스가 정서적, 문화적인 결속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헌정적 애국주의를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문제에 관한 최근의 저작에서 하버마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 “민주적 입헌국가의 정치 이전의 도덕적 토대들”이라는 짤막한 글에서 하버마스는 “개인의 자유에 선행하는 결속의 끈 없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의 보장에 기반해 단일 국가를 이룬 민족이 얼마나 존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종류의 혼란은 하버마스뿐만 아니라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 공통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헌정적 애국주의에 대한 논의를 전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4장에서 시도된 바와 같이 이 개념의 규범적 기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설령 헌정적 애국주의가 액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그러한 논의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에게 정체성의 도덕성에 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도덕적으로 왜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봄으로써 정체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를 효과적으로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남국. 2004. “유럽통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국제정치논총』 44(1). pp. 281-302.
- 조홍식. 2005. “유럽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14(3). pp. 41-68.
- Blake, Michael. 2001. “Distributive Justice, State Coercion, and Autonom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0(3). pp. 257-96.
- Brown, Chris. 1992.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Normative Approach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ruter, Michael. 2003. “Winning Hearts and Minds for Europe: The Impact of News and Symbols on Civic and Cultural European Ident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10). pp. 1148-1179.
- Caney, Simon. 2008. “Global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State.” *Political Studies* 56(3). pp. 487-518.
- Canovan, Margaret. 2000. “Patriotism Is Not Enoug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3). pp. 413-32.

---

서 헌정적 애국주의가 국민 정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리들이 문화적 가치 지향들의 복합체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Habermas and Ratzinger, 2009: 39-41). 이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린다.

- Cederman, Lars-Erik. 2001. "Nationalism and Bounded Integration: What It Would Take to Construct a European Demo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7(2). pp. 139-174.
- Checkel, Jeffery T. and P. J. Katzenstein Eds. 2009. *European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nin, Ciaran. 2003. "Democracy and Collective Identity: In Defense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1(1). pp. 1-28.
- Eriksen, Erik Oddvar and John Erik Fossum. 2004. "Europe in Search of Legitimacy: Strategies of Legitimation Assessed."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5(4). pp. 435-459.
- Erskine, Toni. 2002. "'Citizens of nowhere' or 'the point where circles intersect'? Impartialist and embedded cosmopolitanism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8(3). pp. 457-478.
- European Commission. 2005. *Eurobarometer 2005*.
- Føllesdal, Andreas. 2006. "The Legitimacy Deficits of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4(4). pp. 441-468.
- Goodin, Robert E. "What is So Special about Our Fellow Countrymen?" *Ethics* 98(4). pp. 663-686.
- Habermas, Jürgen. 1996.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J. Habermas,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Trans. William Rehg. Cambridge, MA: MIT Press. pp. 491-515.
- Habermas, Jürgen. 1998(a). "The European Nation-State: On the Past and Future of Sovereignty and Citizenship," in J. Habermas, *The Inclusion of Others: Studies in Political Philosophy*. Eds. Ciaran Cronin and Pablo De Greiff. Cambridge, MA: MIT Press. pp. 105-127.
- Habermas, Jürgen. 1998(b). "Struggle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The Inclusion of Others*, pp. 203-236.
- Habermas, Jürgen. 2001(a). "Postnational Constella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cy," in J. Habermas, *Postnational Constel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pp. 58-112.
- Habermas, Jürgen. 2001(b). "Why Europe Needs a Constitution." *New Left Review* 11(5). pp. 5-26.
- Habermas, Jürgen. 2003. "Toward a Cosmopolitan Europe." *Journal of Democracy* 14(4). pp. 86-100.
- Habermas, Jürgen. 2006. "Religion in the Public Spher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1). pp. 1-25.
- Habermas, Jürgen and Joseph Ratzinger. 2009. 『대화 - 하버마스 對 라칭거 추기경』 윤종석 옮김. 서울: 새물결.
- Huntington, Samuel. 1996.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Foreign Affairs* 75(6). pp. 28-46.

- Kantner, Cathleen. 2006. "Collective Identity as Shared Ethical Self-Understanding: The Case of the Emerging European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9(4). pp. 501-523.
- Kritzinger, Sylvia. 2005. "European Identity Bui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3(1). pp. 50-75.
- Laborde, Cécile. 2002. "From Constitutional to Civic Patriot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2(4). pp. 591-612.
- Lacroix, Justine. 2002. "For a European Constitutional Patriotism." *Political Studies* 50(5). pp. 944-58.
- Lacroix, Justine. 2009. "Does Europe Need Common Values?: Habermas vs Haberma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8(2). pp. 141-156.
- Laffan, Brigid. 1996. "The Politics of Identity and Political Order in Europ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1). pp. 81-102.
- Lu, Catherine. 2000. "The One and Many Faces of Cosmopolitanism."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8(2). pp. 244-267.
- MacIntyre, Alasdair. 1995. "Is Patriotism A Virtue?" in Ronald Beiner, Ed. *Theorizing Citizenship*. Albany: SUNY Press. pp. 209-228.
- Markell, Patchen. 2000. "Making Affect Safe for Democracy: On "Constitutional Patriotism"." *Political Theory* 28(1). pp. 38-63.
- Mayer, Franz C. and Jan Palmowski. 2004. "European Identities and the EU-The Ties that Bind the Peoples of Europe."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2(3). pp. 573-598.
- Miller, David. 1995. *On Nation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Richard W. 1998. "Cosmopolitan Respect and Patriotic Concer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7(3). pp. 202-224.
-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orrice, David. 2000.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d its significanc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2). pp. 233-251.
- Müller, Jan-Werner. 2007. *Constitutional Patriot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08. "A European Constitutional Patriotism? The Case Restated." *European Law Journal* 14(5). pp. 542-557.
- Nagel, Thomas. 2005. "The Problem of Global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3(2). pp. 113-147.
- Petersson, Bo and Anders Hellström. 2003. "The Return of the Kings: Temporality in the Construction of EU Identity." *European Societies* 5(3). pp. 235-252.
- Pogge, Thomas. 1992. "Cosmopolitanism and Sovereignty." *Ethics* 103(1). pp. 48-75.
- Primoratz, Igor. 2009. "Patriot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plato>.

- stanford.edu/entries/patriotism/
- Sangiovanni, Andrea. 2007. "Global Justice, Reciprocity, and the Stat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5(1). pp. 3-39.
- Sassatelli, Monica. 2002. "Imagined Europe: The Shaping of a European Cultural Identity through EU Cultural Polic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5(4). pp. 435-451.
- Scheffler, Samuel. 1997. "Relationships and Responsibiliti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6(3). pp. 189-209.
- Scheffler, Samuel. 2001. *Boundaries and Allegiances: Problems of Justice and Responsibility in Liberal Though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hore, Chris. 2000. *Building Europe: The Cultural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hore, Chris. 2004. "Wither European Citizenship? Eros and Civilization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7(1). pp. 27-44.
- Smith, Anthony D. 1992.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68(1). pp. 55-76.
- Smith, Anthony D. 1993. "A Europe of Nations-or the Nation of Europe?" *Journal of Peace Research* 30(2). pp. 129-135.
- Tamir, Yael. 1993. *Liberal Nation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n, Kok-Chor. 2004. *Justice Without Borders: Cosmopolitanism, Nationalism and Patriot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ler, Joseph H. H. 1999. *The Constitution of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n the Normative Basis of European Identity:

Jürgen Habermas's Constitutional Patriotism

Joon Suk Kim

Full-time Lecture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s at systematically highlighting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proposed by Jürgen Habermas. The European Union is in need of drawing voluntary cooperation not only of member states but also of European citizen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as the integration is no longer solely about the

promo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ut now includes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which has been considered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sovereignty of member states. It is against such a backdrop that many scholars and commentators are proposing ways of forging a sense of common belonging among citizens with diverse political, na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In contrast to more traditional type of identity which, based on common history, culture or language, emphasizes emotional attachment to one's own community, constitutional patriotism avoids becoming exclusive and aggressive by putting greater stress on universal and ra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like human rights, freedom, democracy as the object of identification. Such an attempt to build a new identity, however, has its own difficulties, for constitutional patriotism as rational and universal identity raises a dilemma that defies an easy resolution. In particular, two questions arise here. First, is constitutional patriotism realistic enough? Second, is constitutional patriotism normatively valid? If so, on what grounds? How can we explain and justify the normative basi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On the first question, Habermas offers a persuasive answer, drawing upon his general social theory. He claims it is fairly possible to bring constitutional patriotism into existence thanks to the overall increase in citizens' reflexive and critical ability in modern society. On the second question, on the other hand, his answer remains inconclusive, giving rise to confusion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To be more exact, the dilemma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Constitutional patriotism takes universal impartiality as its normative ideal. It is, however, also an attitude of loyalty and commitment to one's own community and its members. How, then, can we reconcile these conflicting claims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To provide an proper answer to such a question, we need to go beyond Habermas's own account and to discuss and assess the normative validity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in the context of cosmopolitanism-communitarianism debate. That way, we can understand how it is possible for a citizen to remain loyal to his or her own community without having to give up cosmopolitan impartiality. We can also expect to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not only about the question of European identity but also about the problem of "ethics of identity" in general.

Key Words: European integration, identity, constitutional patriotism, Jürgen Habermas, cosmopolitanism, communitarianism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Tel\_010 3348 4185 Email\_midway555@naver.com